

## [ 종합·국제 ]

# 한국, 美 비자면제국 '빨간불'

7월 말 비자거부율 3.5%…9월 말까지 3%↓ 달성해야 요건충족

90일내 단기 방문할 경우 비자가 면제되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2008년까지 가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비자거부율이라는 암초를 맞났다.

지난 달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8월말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자거부율은 3.5%에 달해 VWP가입 요건인 '3% 미만'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부터 8월말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삼아 비자면제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8~9월 두달간 4천건 가량의 비자신청이 거부되거나 통과돼야만 3%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8월말 현재 거부율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한달을 남긴 상황에 서 3%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낙관하

기 어렵다"고 말했다.

VWP가입 위해서는 비자거부율 외에도 전자여권 도입, 한미간 사법공조체계 구축 등 다른 요건들도 만족시켜야 하지만 비자거부율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른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울들어 한국인이 연루된 성매매 조직들이 있따라 미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도 VWP가입 심사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9월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VWP 가입과 관련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듯 하다. 두 정상이 아무리 좋은 말을 주고 받더라도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예비역 장성들 “작동권 차기정권에 미뤄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 77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항공회관에서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비역 장성들이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 2008년 이후 재도전키로”

정부는 2007~2008년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후보로 입후보를 철회하고 2008년 이후 재도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2001년 2007~2008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후보로 입후보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와 동시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추진을 가까운 시기로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는 매년 5개국씩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을 새로 선출한다.

/연합뉴스

## 日, 佛방송‘독도는 한국섬’ 방영취소 압력

프랑스 공영 TV인 프랑스5가 지난 18일 방영한 독도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민족주의 확산·군사 재무장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집요한 방영 취소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의 보도에 따르면 주불 일본 대사관이 “일본, 과거의 그림자”란 52분짜리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 1개월 반 동안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방영 취소를 시도했다.

리베라시옹은 “일본 외교관들이 다케시마 섬(한국의 독도)에 관한 영토 분쟁과 애스쿠니 신사 문제, 일본 교과서의 수정주의와 관련해 이를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5에 여러 차례 전화했고 경영진에 서한도 보냈다”고 전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러나 예정대로 지난 18일 방영됐다.

한편 프랑스5 TV 홈페이지는 다큐멘터리 내용을 축약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을 언급, 독도(Dokdo)를 한국의 섬으로 표현하고 다케시마란 명칭은 괄호 안에 처리했다.

방송은 한국이 특히 독도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는데 일본이 격렬하게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5가 독도 문제와 현재 일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리=연합뉴스

## 노인복지교육사 / 케어복지사

### 특별강좌 개설

### 노인수필보컬집 및 각종 선진복지제도 시장 -고령화 사회의 회고 유형작품-

### 합격보장 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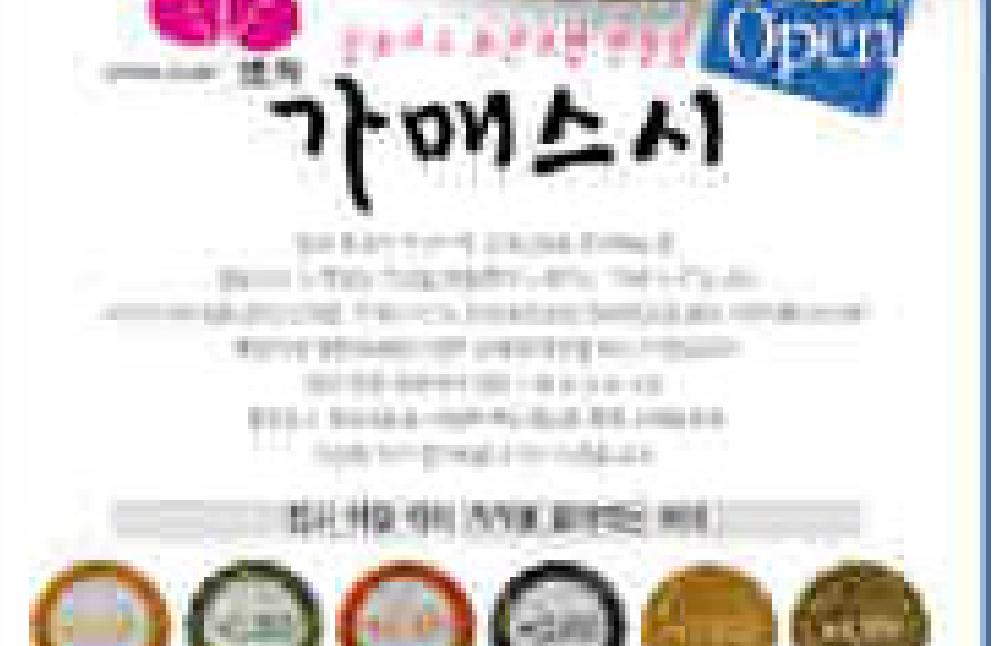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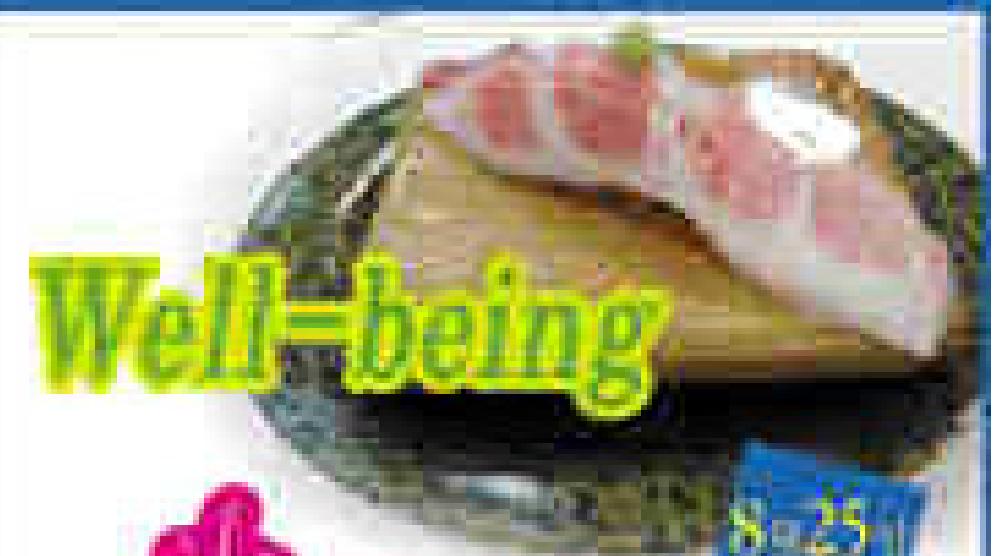
전경 사회복지 실무자 전문학원으로서 노인복권교육, 자동차·생활·사회복지사립교·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습과 함께 최근 사회복지사립교·

- 특별강좌: 노인수필작품 및 노인작품
- 합격보장: 합격보장 및 학원
- 학원: 학원
- 학원: 학원
- 학원: 학원



노인복지법인  
아카데미평생교육원

062) 522-8600



## ■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수능 성적 1~9등급만 통지

### 소외계층·지역균형 전형 대폭 늘려

### 학생부 평가(수·우·미·양·가) 없애

현재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되는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또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도 대폭 늘어난다.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과학고는 이공계열, 국제고는 국제계열에 한정돼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외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의 경우 같은 계열로 진학할 때는 동일계열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학계 열이나 법학계열 등으로 진학하면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부의 경우 성적 부록리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 /과목평균(표준점수)과 석차등급(이수자 수)이 표기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http://moe.go.kr)→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동일계열 특별전형·수능 언어영역 문항 축소

### 어떻게 달라지나

#### 2008년 대입 변경 사항

구 분	2007학년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제공	2008학년도 등급(9등급)만 제공	비 고
동일계 특별전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 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등급일계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학계 열이나 법학계열 등으로 진학하면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08 대입 제도 개선안
특별전형의 전형원칙	-	국가·사회·기여자·후손·소년소녀·기장·이동복지시설·퇴소자·산업체·재학자에 대한 정원 내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2008 대입 제도 개선안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당해연도 시험목록 및 다음 학년도 수능 등급 제한	당해연도 시험목록 및 다음 학년도 수능 등급 제한. 경마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개정
제도개선사항	-	수시 1학기 모집 점진적 폐지 2008학년도 및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험여부를 결정하고, 2010학년도 이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검토(관련연구 및 의견수렴 등)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 축소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관련연구 및 의견수렴 등) 실습계 정원의 특별전형 확대 정원의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법률 개정 중)	교육혁신 위원회 제안

탐구영역 문항을 현재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정행위 조치 등 기타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소지 등 경미한 부

정행위자는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학년도 응시도 제한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